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적용범위(안 제3조)
- 3)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4)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(안 제5조 ~ 제6조)
- 5) 지원기준 등(안 제7조)
- 6) 보조사업의 종류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(안 제8조 ~ 제9조)
- 7) 보조금의 교부결정, 사정변경, 정산보고 등(안 제10조 ~ 제12조)
- 8) 보조금의 교부제한(안 제13조)
- 9)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4조 ~ 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금천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됨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- “소규모 공동주택” 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아파트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등)으로 정의함. 이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의의가 있다 봄

나)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(안 제5조 ~ 제6조)

- 안 제5조에서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다) 지원기준 등(안 제7조)

-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,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

라) 보조사업의 종류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(안 제8조 ~ 제9조)

- 우·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, 수목 등 조경시설,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(석축, 옹벽, 담장 등 보수공사)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를 보조사업의 종류로 규정함

- 마) 보조금의 교부결정, 사정변경, 정산보고 등(안 제10조 ~ 제12조)
- 바) 보조금의 교부제한(안 제13조)
- 사)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4조 ~ 안 제15조)

3) 검토 의견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에서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’ 라고 규정하고 있고, 이를 근거로 금천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
-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,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, 그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